

「민원처리에 관한 내규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5. 1. 6. 개정 판 (시행 2024. 12. 1.) → 2019. 5. 13. 제정 판 (시행 2019. 5. 13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452/compare?from=1623&to=1161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51:44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소통위원회) ① 소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기획처장(위원장), 학생부처장(서기), 학생처장, 기획팀장, 대외국제팀장, 교수지원팀, 학사지원팀장, 학생대표(2), 조교대표(1), 초청위원(해당민원 팀장)으로 구성한다. <u>개정 2025-01-06</u>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. 1.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,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. 2. 조교대표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.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단,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.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1.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한 사항 2. 대학 내 소통관련 문제에 대한 중재 사항 3. 민원 처리 중 규정 또는 정책에 관련한 자문 4. 민원처리 부서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5. 민원의 사안별 TF구성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“제5조 제5항”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⑦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. 단,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. ⑧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. 단, 민원인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.	제6조(소통위원회) ① 소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기획처장(위원장), 학생부처장(서기), 학생처장, 기획평가팀장, 대외국제팀장, 교수지원팀, 학사지원팀장, 학생대표(2), 조교대표(1), 초청위원(해당민원 팀장)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. 1.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,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. 2. 조교대표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.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단,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.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1.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한 사항 2. 대학 내 소통관련 문제에 대한 중재 사항 3. 민원 처리 중 규정 또는 정책에 관련한 자문 4. 민원처리 부서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5. 민원의 사안별 TF구성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“제5조 제5항”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⑦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. 단,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. ⑧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. 단, 민원인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.
제8조(민원의 이관 및 회피) ① 민원 중 갑질관련 민원은 내부감사실, 인권침해 관련 민원은 SU인권센터로 이관하며, 이관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. ② 민원 중 단순비방, 비인격적인 용어사용, 홍보 등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소통담당부서 팀장의 판단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.	제8조(민원의 이관 및 회피) ① 민원 중 갑질관련 민원은 갑질지원센터, 성폭력, 성폭행, 성추행, 성희롱 관련 민원은 양성평등센터로 이관하며, 이관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. ② 민원 중 단순비방, 비인격적인 용어사용, 홍보 등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소통담당부서 팀장의 판단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.